

1999. 12. 24.(금)

제55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

제천시 세감면 조례 중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總務委員會

#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2. 14. 제천시장
- 나. 회부일자 : 1999. 12. 14.
- 다. 상정일자 : 1999. 12. 20. (제50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회의)

#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지선대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수도권내에 있는 본점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할수 있도록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제천시세 감면 조례중 제24조의 6을 신설
  -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
-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키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. 12.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

- 재산세 및 종토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은 면제, 그 다음 3년간은 50%를 경감.
- 본사와 공장의 적용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 2,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태훈)

#### ○ 법규적검토

-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는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“과밀억제권역” “성장관리권역”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동조례상의 권역명칭과 동일하며,
- 지방세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 근거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장 제114조의 2에는 “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”, 동법 제115조에는 “대도시외로의 이전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”이 명시되어 있고, 동 조례에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었으므로 타당함.
-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정한 감면 범위내임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며,
- 지방세법 제9조에서 정한 “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”라는 규정에 따른 제천시세 감면 조례상 신설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.

## ○ 행정적 검토

- '99. 6. 29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"기업의 지방 이전시 각종지원방안"과 '99. 8. 23일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대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에 따라
- 동 조례의 개정조례(안)이 '99. 9. 28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각시도로, '99. 10. 14일 충북도에서 각 시.군으로 통보된 바 있으며 이때에 "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"라는 지시가 있어
- 본 시에서는 '99. 11. 5일 입법 예고한 결과 이의 제기사항이 없었으며 '99. 12. 13일 '조례. 규칙심의회' 개최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임으로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며,
- 아울러 동 조례가 개정된다면 수도권내에서의 법인이나 공장의 지방 이전이 촉진되어 제천시로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.

## 4. 질의답변 요지

- 질의답변 없음

## 5. 토론요지

- 토론 없음

## 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## 7. 심사보고 블임서류

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